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18 - 2호

「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8년 3월 30일

상주시의회 의장



「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확대하여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 확대(별표)
 - 개정전 37개 대상마을 → 개정후 94개 대상마을
(함창읍 덕통1리 외 56개 마을 추가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·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상주시의회의장 [참조 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,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]에게 제출하

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(전화 : 054-537-7841, FAX : 054-535-9854, 상주시의회 홈페이지 www.sangjucouncil.go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 : (단체의 경우 단체명, 대표자)
- 주 소 :
- 연락처 :

조례안 내용	의견 내용	비고